

보 고 사 항

□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기타 일반안건

□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00. 8. 22

(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5호)

<광고내용>

- 집회일시 : 2000. 8. 29 (火) 10:00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00. 7. 4 집행부 이송
-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00. 7. 4 집행부 이송
-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00. 7. 4 집행부 이송
-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0. 7. 4 집행부 이송
 - 고 시 일 자 : 2000. 7. 5
 - 고 시 번 호 : 화순군고시 2000 - 261호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7. 4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7. 13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0호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7. 4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7. 13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1

○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 2000. 7. 4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7. 13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2호

○ 화순군온천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7. 4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7. 13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3호

□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

○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0. 8. 22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4

- 회 기 : 2000. 8. 29. ~ 9. 5 (8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0. 8. 29 의장제의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요구의 건

- 발 의 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4

- 주 문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계획

일 시	보 고 대 상	보고자
2000. 9. 1 (金) 10:00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해당 실·과·소장
2000. 9. 2 (土) 10:00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 제안이유

-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실시하였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금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 하고
-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 화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000. 8. 2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조례상의 남녀차별적 규정의 변경과 정부조직법의 개정 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달라진 업무의 조정 및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 주요골자

-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의 변경 (안 제6조)

- 부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여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산림과→환경과) (안 제7조, 제8조)
-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에 관한 사항
- 보건소의 위치 변경 (안 제4조 별표)
- 화순군 화순읍 교리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 ※ 2000. 8.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000. 8. 2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별정직 임용분야를 최소화함으로써 우수 인력 확보 및 공직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주요골자

- 별정직 임용대상 중 「문화재관리요원」 폐지 (안 제2조)

※ 2000. 8.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8. 21 군수제출

— 제안이유

- 화순군행정기구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공인 조례를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자구 수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 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개정

※ 2000. 8. 21. 총무위원회 회부

○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산공원내 사유지 매입)

— 2000. 8. 21 군수제출

— 제안사유

- 화순읍 남산 공원은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상징적인 근린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는 균유지와 사유지로 되어있어 근린 공원으로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그 부지중 사유지 일부를 매입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푸른 도시 환경과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 근린공원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과 균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취득대상 공유재산

(단위 : m², 천원)

구 분	위 치	면 적	공시지가	취득시기	소유자
취 득	화순읍 삼천리 592번지 등 6필지	5,942m ² (1,797평)	100,000	하반기	광산노씨 휘남공파 등 6명

— 취득사유

- 화순읍 남산공원 녹지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지중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 계획성있게 쾌적한 근린공원 조성으로
-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공공용 균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2000. 8. 21. 총무위원회 회부

○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보건소 매각)

— 2000. 8. 21 군수제출

— 제안사유

-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 719번지에 보건소를 현대식으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 구 보건소 이용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주차장은 협소하고 본청과 600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수선할 경우 수선비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므로
- 구 보건소를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에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매각대상 토지

(단위 : m², 천원)

구 분	소 재 지	지목 (구조)	면적	공시지가 (표준시가)	비 고
계				531,932	
토지	화순읍 교리 186-1번지의 5	대 지	1,653m ² (500평)	267,228	
건물	"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03.21m ² (394.2평)	264,704	'83년, '95년신축

— 매각사유

- 본청과 600m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할 만한 계획이 없고, 관리할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비 및 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임.

○ 매각하여 공용·공공용 대체재산 조성사업에 총당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2000. 8. 21.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8. 21 군수제출

—제안이유

· 주차장법 개정(2000. 1. 28공포, 7. 29시행)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주요 내용

-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 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 법19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 2000. 8. 2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 2000. 8. 21 군수제출

-제안이유

· '97.9.11 이후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규제되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기 위함

-주요 내용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지역)

1.다음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가.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나.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하천법에 의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아.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
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
당하는 지역을 말함)단,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집단화된(10호 이
상) 취락의 지역내에 지목이 대지, 나대지에 한한다

—관련법령 및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2000. 8. 2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 2000. 8. 21 군수제출

—제안이유

· 도시공원및 녹지안에서 공원·녹지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
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
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공원·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
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점용허가하기 위함

—주요 내용

(공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에 직접 기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

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나.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로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다.공원을 관리하는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건축물

라.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마.노외주차장

바.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에 직접 기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나.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로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다.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라.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마.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관련법령 및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2조의2, 제30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7조

※ 2000. 8. 2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